

4.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☐ 개정이유

-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 1. 28, 법률 제6236호)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민원 신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
- 이에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함(안 별표1)
 -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시 : 중개업자 9,000원, 법인 20,000원
 -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: 9,000원
 -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시 : 9,000원

☐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된(시행은 7월 29일부터) 제4조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민원 신청과 동법 제37조의3 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
- 경기도내 시·군의 중개업관련 수수료 예정 금액을 비교하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시 공인중개사는 9,000원, 법인은 20,000원,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는 9,000원, 분사무소의설치신고는 9,000원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금액으로 사료됨